

Fn insurance

The Financial Insurance Magazine



FOCUS

보험업계, ‘큰손’ 잡아라… 고령자 고객 유치戦 ‘치열’

SPECIAL REPORT

대형마트서 대놓고 ‘브리핑 영업’… ‘상습 GA’ 관리 · 갑독 “구멍”
“일 더하기 일은 과로死”… 높은 ‘산재문턱’
‘뉴식스티’ ‘어반그래니’ ‘휘게라이프’ 끼지… 보험 “안락한 삶” 주목하라!
어린이 안전사고 또 ?… “방심은 금물”
“멸종위기” 3%이상 질병후유장해… 벼랑 끝 ‘절판’ 돌입
회사 ‘단체보험’ 믿었다간 큰 코… ‘개인실손’ 가입 긴요
포켓몬고 ‘광풍’… 전세계 ‘포켓몬 보험’ 출시 러시
新종신보험 “각축”… ‘사망 + 노후생활비 + 헬스케어’ 융합 러시



SPECIAL INTERVIEW

연극 <주먹쥐고 치삼> 이동근 PD
'3초'의 화마가 빼앗아간 삶… '꿈'과 '보험'으로 다시 날다



보험금 지급 다툼?…

해답은 '약관' 속에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소위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를 둘러싼 해석 논란이다.

[사실관계]

갑(甲)은 을(乙) 생명보험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계약(주계약)을 체결하며 보험가입금액을 5000만원으로 하는 재해사망특약도 함께 부가했다.

해당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주계약), 만일 피보험자가 재해분류 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는 재해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5000만원을 추가 지급(재해특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甲은 경부선 철도 하행선 선로에 누워있던 상태로 화물열차에 역과돼 하반신 절단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甲이 신병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자살'로 변사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망인(甲)의 유족들은 乙 보험사에 대해 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과 재해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지급거절했다. 이에 甲의 유족들이 乙 보험사를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한편, 이 사건 재해특약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면책조항 및 면책제한조항이 규정돼 있다.



■ 해당 사건 재해특약 약관

제0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에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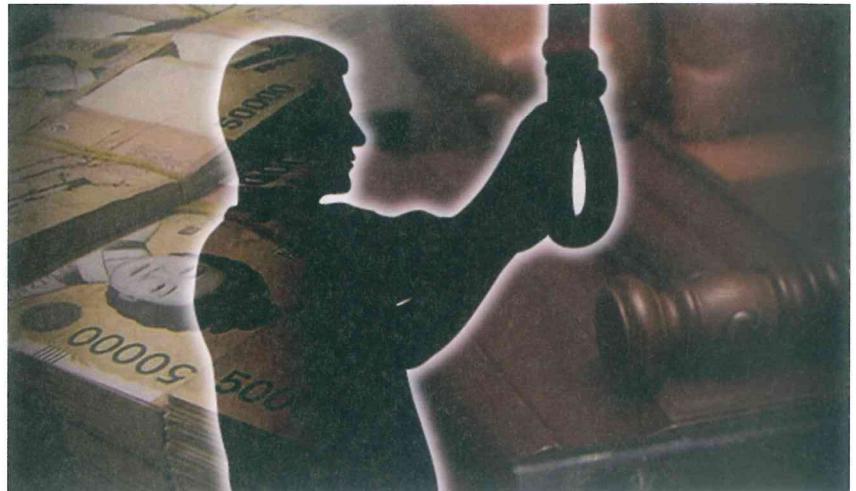
[원심판결]

자살은 이 사건 재해 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약관상 ‘면책제한조항’이 이 사건 재해특약에 규정된 것은 처음부터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이 사건 재해 특약의 약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부주의하게 그대로 사용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면책제한조항이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이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해당 면책제한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

위 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돼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예외사항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이다.

즉 대법원은 이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약관 해석에 관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평석]

위 사건은 소위 ‘자살이 재해냐’를 둘러싸고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에 관해 오랫동안 다투어져 온 사건이다.

그런데 자살은 재해, 즉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는 아니다. 그렇다면 자살의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면 안될까? 하지만 이는 명백하게 자살이 재해냐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보험약관에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해져 있느냐’ 여부로 결정하는 것이지, 해당 보험상품의 제목이나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해당 보험상품이 재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설계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로 재해를 담보하기 위한 상품이라는 의미일 뿐이지, 재해가 아니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험금 지급사유는 이와는 별개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면책제한조항에 따르면, 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②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에서 제외된다는 것, 즉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임은 문언 상 명백하다(서울행정법원 2015. 11. 13. 선고 2014구합71993 판결 등 참조).

보험약관의 해석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해석되고, 여기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까지 더해 본다면 더 이상의 논란은 무의미하다. 결국 이번 판결은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험상품의 특성이 아니라 보험약관에 보험금 지급사유로 기재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단순한 법리를 일깨워준 판결이다. InS

글_박기역 변호사



박기역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보험분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에서 위원(보험편)으로 근무